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71호
2. 발 의 자 : 최 선 의원
3. 발의일자 : 2020. 2. 5.
4. 회부일자 : 2020. 2. 12.

II. 제안이유

- 최근 스쿨미투(#MeToo) 및 학교 내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 등의 이유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2018.2.5.)’ 청원 등 학교 내 성평등 교육 강화 및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4조, 제18조, 제29~31조, 제36~37조 등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의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실천함.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한 성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3조).
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

- 청 성평등 교육환경 활성화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4.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6~8조).
 5.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하여 교원대상 자격 및 직무연수 편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6.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상호협력적 성평등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최 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71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청소년 세대에서 발견되는 성평등 의식의 격차와 갈등이 학교 내 여성혐오로 이어지면서 자라나는 세대에서의 균형적인 성평등 인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¹⁾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스쿨미투 문제는 교사와 직원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성인지적인 사고와 태도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 또한, 청와대 게시판에 초·중·고에서 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되어

1) 보도자료: 학교 안 혐오현상 실태는 어떻게 대책은 또 뭘까? (연합뉴스 2019.12.05.)
‘반페미니즘’과 교실의 여성혐오(한겨레, 2019.4.28.)

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한 달 만에 21만 명 이상이 해당 게시물에 서명할 정도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교육부는 통합적인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인간 존중 및 남녀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서울교육공동체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및 성인지 연수 확대, 성평등 교육 내실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3대 핵심영역으로 지정하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성평등위원회의 구성·운영,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성평등 교육환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동 계획수립과 관련된 규정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적 사항을 포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총 망라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계획과 제8호의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추진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 학교폭력 근절 대책, 예산 편성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 조성에 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격연수 및 직

무연수과정 운영 시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연수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성평등’ 주제의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성폭력 교육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관련 연수 및 교육훈련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2019년 성평등 관련 자격연수·교육훈련·직무연수 운영 현황

구분		교육과정 명	시간	비고
자격연수	초등	교장 연수	성희롱,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2
		교감 연수	성희롱의 실태와 예방미투, 젠더교육의 이해	2
		1정 연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중등	교장 연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2
		교감 연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	3
1정 연수		학교폭력(성폭력, 성희롱)예방, 생활지도	3	
교육훈련	본청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2	
	교육연수원	일과 가정의 밸런스 찾기	2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2	
		인권 및 성평등 현장지원단 연수	30	
직무연수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학교 만들기	1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